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2020. 12

김용하



## 머 리 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13년 만에 서비스 공급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잘 정착되어 치매·중풍 등으로 힘들었던 노인과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이 2008년 4,585억 원에서 2019년 7조 8,127억 원으로 연평균 29.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누적 적립금도 감소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민영보험과 협력해서 동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인 노령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지출 추이와 이에 상응하는 재정수입의 정도를 재정추계모형을 이용하여 전망해 봄으로써 동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의 필요보험료의 산정을 통하여, 보험료 변화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 재정방식 개편 방안을 다각적으로 비교함과 아울러 독일·일본 등 선진국 사례 연구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능을 정립하고 민영보험과 역할분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그 연구결과를 정책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0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안 철 경



## ■ 목차

---

요약 / 1

I. 서론 / 2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 3
3. 연구의 구성 / 4

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분석 / 5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 5
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 8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 12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수요 예측과 재정전망 / 14

1. 분석모형의 설정 / 14
2.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 18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전망 / 22

IV.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 형평성 / 26

1. 보험료 부담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 26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 35
3. 분석결과의 평가 / 45

V.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47

1. 주요국의 공·사 간 역할분담 사례와 시사점 / 47
2.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 52
3.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53

VI. 결론 및 정책제언 / 55

1. 결론 / 55
2. 정책제언 / 56

| 참고문헌 | / 58

## ■ 표 차례

---

- 〈표 II-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범위 / 5
- 〈표 II-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별 변화 추이 / 6
- 〈표 II-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증가 요인의 분해 / 12
- 〈표 II-4〉 생명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실적 / 13
- 〈표 III-1〉 통계청 출산율 및 기대수명 가정 / 16
- 〈표 III-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인구 및 보험료 납입자 수 / 18
- 〈표 III-3〉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요자 수 예측 / 19
- 〈표 III-4〉 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요 예측(방문 재가 서비스) / 20
- 〈표 III-5〉 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요 예측(시설 서비스) / 21
- 〈표 III-6〉 노인장기요양 재정수요 및 재원 분담구조 예측 / 22
- 〈표 III-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전망 / 23
- 〈표 III-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입 전망 / 24
- 〈표 IV-1〉 평균보험료(65세 미만 해당 연령 신규가입자 기준, 남자) / 28
- 〈표 IV-2〉 평균보험료(65세 미만 해당 연령 신규가입자 기준, 여자) / 29
- 〈표 IV-3〉 종합보험료(균형기간별) / 34
- 〈표 IV-4〉 부과방식 필요보험료 및 목표연도 기금유지 필요보험료 / 35
- 〈표 IV-5〉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남자) / 37
- 〈표 IV-6〉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여자) / 38
- 〈표 IV-7〉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65세 이상 가입자) / 42
- 〈표 IV-8〉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건강보험가입자 전체) / 43
- 〈표 IV-9〉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65세 이상 전체 인구) / 44
- 〈표 V-1〉 일본의 연도별 제1호 피보험자 수 추이(연도 말 기준) / 47
- 〈표 V-2〉 일본의 간병보험·개호특약 가입률 / 49
- 〈표 V-3〉 독일 민영 요양보험 가입 현황 / 51

## ■ 그림 차례

---

- 〈그림 I-1〉 연구의 구성 / 4
- 〈그림 II-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변화 / 7
- 〈그림 II-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변화 / 8
- 〈그림 II-3〉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수지 및 수지율 / 9
- 〈그림 II-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의 증가율 비교 / 10
- 〈그림 II-5〉 급여 증가율과 수가 인상률과 인정자 수 증가율의 합의 비교 / 11
- 〈그림 II-6〉 치매보험 가입 동향 / 13
- 〈그림 III-1〉 거시경제변수 가정 / 15
- 〈그림 III-2〉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V-1〉 평준보험료(남자 연령별) 비교 / 29
- 〈그림 IV-2〉 평준보험료(여자 연령별) 비교 / 30
- 〈그림 IV-3〉 평준보험료(25세 가입 기준) / 30
- 〈그림 IV-4〉 평준보험료(30세 가입 기준) / 30
- 〈그림 IV-5〉 평준보험료(35세 가입 기준) / 31
- 〈그림 IV-6〉 재정방식별 보험료 전망 / 32
- 〈그림 IV-7〉 재정방식별 적립기금 전망 / 33
- 〈그림 IV-8〉 연령별 평균보험료 부과 시 재정전망 / 33
- 〈그림 IV-9〉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65세 기준) / 38
- 〈그림 IV-10〉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70세 기준) / 39
- 〈그림 IV-11〉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75세 기준) / 39
- 〈그림 IV-12〉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80세 기준) / 39
- 〈그림 IV-13〉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85세 기준) / 40
- 〈그림 IV-14〉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연령별 남자) / 40
- 〈그림 IV-15〉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연령별 여자) / 40
- 〈그림 IV-16〉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65세 이상 가입자) / 44
- 〈그림 IV-17〉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 45
- 〈그림 IV-18〉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65세 이상 전체 인구) / 45
- 〈그림 V-1〉 일본의 요개호 인정자 수(당해년도 말) / 48
- 〈그림 V-2〉 일본 개호보험의 총지출 / 49
- 〈그림 V-3〉 독일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추이(1995~2018년) / 51



## **A Study on the Role Allocation of Private Insurance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finances of LTC insurance for the elderly,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08, are rapidly deteriorating. As benefit expenditures increase rapidly, the premium rate is also rising rapidly. In 2020, the elderly long-term care premium rate increased from 0.21% in 2008 to 0.68%, increasing by 3.24 times.

This study analyzes sustainability through forecasting demand for LTC and changes in financial and insurance premium burdens, and review plans to reform the financial method as a way to actively respond to the increase in cost burden. Find ways to share the role of private insur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expenditure of LTC will increase by 7% every year, and the necessary insurance premium should increase from 380,000 won per year in 2021 to 940,000 won in 2030, 6.5 million won in 2050, and 16.99 million won in 2065. (average annual growth rate: 9.0%). By 2046, it is expected that the necessary insurance premium based on the method of Pay as You Go Method will exceed premiums based on the method of Funding Method. In that case,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 of equity of premiums between generations could be raised.

This study suggests raising the accumulation rate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by reorganizing the current financial method, which is operated as PAYG method to alleviate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on households at the time of the peak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If it is difficult to convert to the Funding Method, it is suggested to carefully consider the plan of partly introducing an alternative private insurance system as in Germany.



## 요약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다.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되어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향후 그 속도가 더욱 높아질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하여 봄으로써 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여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 I.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현재 재정지출 규모가 9조 원을 넘어 서고 있는 주요한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재정지출 증가는 제도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노인인 구 수의 증가로 지출 증가는 예상된 것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2008년 0.21%에서 2020년 0.68%로, 12년만에 3배 이 상 인상된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의 빠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연도별 적자폭도 커져서 2015년 2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2019년에는 7천억 원대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제적 부담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아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 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때 동 제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인지, 그 리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를 가늠해 보고, 이러한 부담 증가를 현행 사회보험제 도의 틀 속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의 지속가 능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민영보험과 협력해서 동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인 노령기의 국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하여 가족의 부 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함에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 증가 원인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 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지출 추이와 이에 상응하는 재정수입의 정도 를 재정추계 기법을 이용하여 전망함으로써 동 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자 한다. 그리고 동 제도의 필요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 변화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차이를 알아보고, 산출된 세대 간 비용부담의 차이가 세대 간 공평성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정도인지를 가늠하여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민영보험과의 역할분담 가능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동 제도의 재정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소요는 사회보장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년에 1회씩 재정전망을 통하여 점검되고, 이에 대한 실무적 재정추계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예산정책처(2019b)에서 동 제도를 포함한 8대 사회보험제도의 중기 재정전망을 시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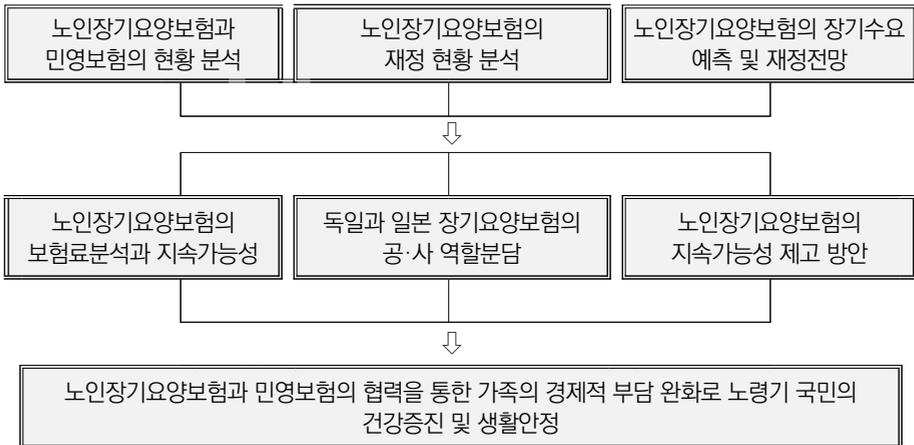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외부 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최근에 분석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보험 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강성호·김혜란(2019)의 연구가 있다. 위의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과 독일과 일본의 공·사 요양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민영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 동 제도에 대한 재정이 심각해지자, 기획재정부의 재정평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의료사업군에 대한 심층 평가 연구인 석재은 외(2020)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문제가 다루어졌다. 또한 김용하(2020)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문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련 연구에 기초하여,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험 원리에 기초한 평균보험료 산정 등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문제 해법의 하나로 사회보험뿐만이 아니라 민영보험과의 기능과 역할분담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공적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현황과 민영 보험인 간병보험 및 치매보험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제3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수요 예측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분석하고, 동 제도의 재정지출, 재정수입, 재정수지 등 재정전망을 시행한다. 제4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별, 연령별 평균보험료 분석을 통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구조를 분석하고, 이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간접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존의 연구 문헌에 기초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민영보험과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통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의 제고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 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분석

###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적으로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험 급여의 주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령계층이지만 보험료 등 비용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기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제도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보험형태의 가입자와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함께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의 개념도 모호하다. 가입자로서 보험료 납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5,288만 명(2019년)이지만, 보험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800만 명(전체인구의 15.1%)이 된다.

〈표 II-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범위

(단위: 천 명)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의료보장	50,001	50,581	51,169	51,757	52,273	52,557	52,880	
건강보험	48,160	48,907	49,662	50,316	50,763	51,072	51,391	
의료급여	325	117	115	111	100	95	96	
기초수급	1,517	1,557	1,392	1,330	1,409	1,390	1,392	
65세 이상	의료보장	5,086	5,449	5,922	6,463	6,940	7,612	8,003
	건강보험	4,600	4,979	5,468	6,005	6,445	7,092	7,463
	의료급여	80	48	47	45	42	40	42
	기초수급	407	422	407	413	453	479	49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보험료 수입과 보험료의 20%에 상당하는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 및 기초수급 대상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금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2008년에는 3,723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조 8,506억 원으로 연평균 26.3% 증가했다. 국고지원금은 2008년에는 1,181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8,912억 원으로 연평균 20.3%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부담금은 2008년 2,575억 원에서 2019년에는 1조 6,986억 원으로 연평균 18.7% 증가했다. 총수입은 연평균 23.3% 증가하여 2008년의 7,518억 원에서 2019년 7조 4,97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의 증가는 가입자 수, 가입대상자 소득, 보험료율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자 수는 연평균 0.5% 증가하였지만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6.3% 증가한 것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0년에는 국민건강 보험료 대비 4.05%(2008년)에서 10.25%로 상승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55%로 인상되었다. 보험료율이 동기간에 2.62배 증가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급여지출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료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로 급여지출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의 20%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보험료 수입에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다. 국고지원금의 동 기간 증가율은 20.3%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 26.3% 보다 낮은 것은 정부가 보험료 수입에 상응하여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별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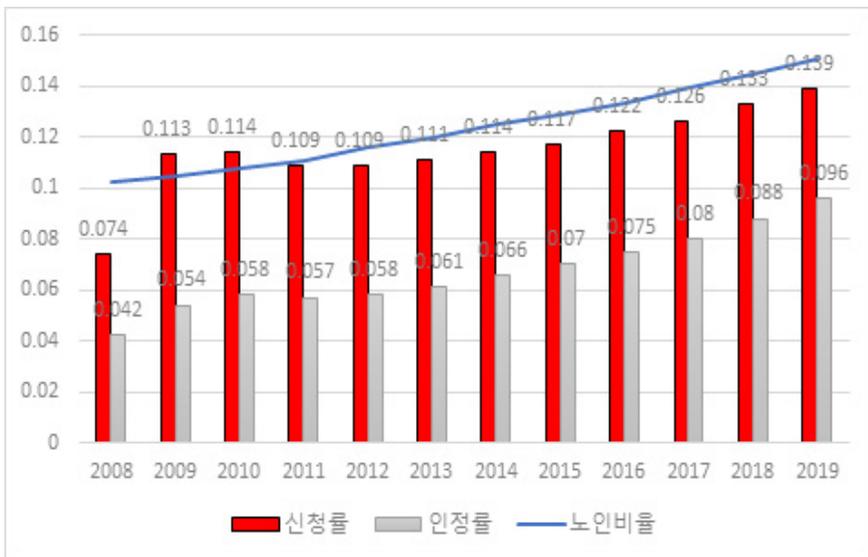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총수입	7,518	27,720	34,706	40,439	46,635	60,657	74,977
장기요양보험료	3,723	17,509	23,137	26,612	30,506	38,474	48,506
국고지원금	1,181	3,323	4,152	5,033	5,525	7,107	8,912
의료급여부담금	2,575	6,708	7,028	8,068	9,773	14,385	16,986
기타수입	39	180	389	726	831	691	57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2020. 9)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와 인정자 수를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신청자는 111.3만 명, 인정자는 77.2만 명이다. 노인인구 대비 신청률은 2008년 7.4%에서 2019년 13.9%로 높아졌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9년 9.6%로 높아졌다. 신청자 수는 동기간 연평균 10.4% 증가하였는데 비하여, 인정자 수는 동기간 연평균 12.4% 증가하였다. 2008년에서 2019년 기간 중 노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4.2%인 것과 비교할 때, 인정자 수가 더 높은 증가율(7.8%p)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변화

(단위: 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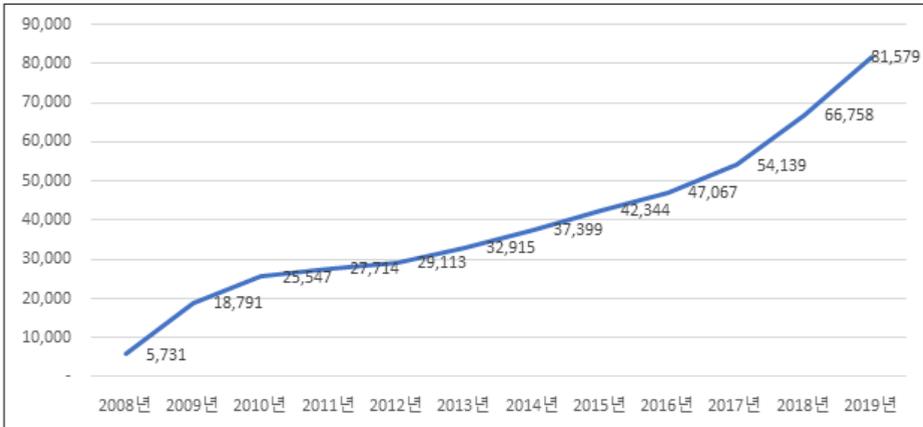
## 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 가. 재정지출의 변화 추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은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9년 8조 1,579억 원으로 연평균 27.3% 증가하였다. 급여지출은 동 기간 중 4,585억 원에서 7조 8127억 원으로 연평균 29.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여지출 증가는 인정자 수 증가(12.4%)보다 17.0%p가 높은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총지출의 증가 곡선은 2017년 이후 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제도상의 증가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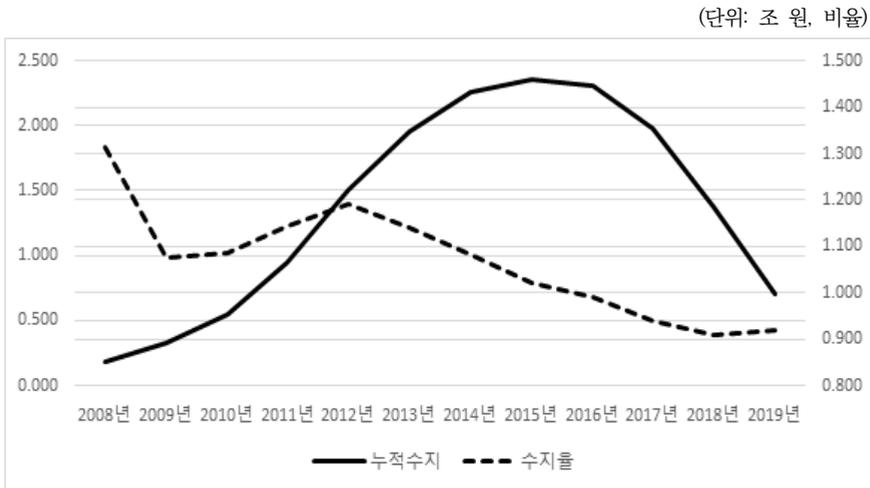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2020. 9)

2008~2019년 기간의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이다. 이는 앞에서 보였던 총지출 증가(27.3%)보다 낮은 것이다. 수지율(총지출 대비 총수입)은 2008년에는 1.31이었으나 2019년에는 0.92로 떨어졌다. 수지율은 2016년부터 1 이하로 하락하였는데, 재정수지가 2016년부터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립금도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4조 원이었으나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

환하여 2019년에 0.7조 원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단년도 회계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년도 지출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당년도 수입액으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차기 연도의 정확한 지출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몇 년간 지출 추이를 기준으로 지출액을 예정하고 수입액을 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지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예상되는 지출액과 수입액을 조정하여 실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수지 차의 변동은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sup>1)</sup>하여 당년도 지출액의 50%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의 준비금 비율은 9.0%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된 것이다. 2016년 이후 몇 년간 지출의 증가에 상응하여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림 II-3〉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수지 및 수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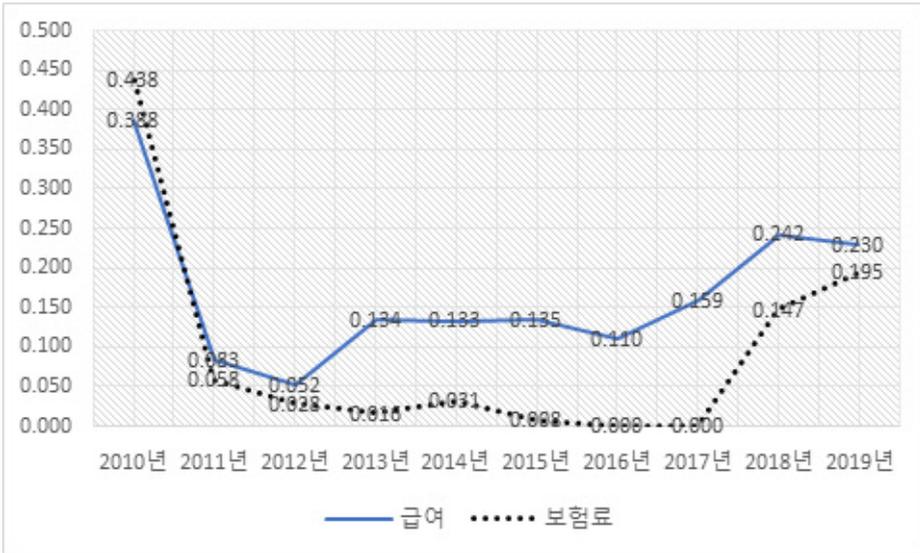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2020. 9)

1)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그림 II-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의 증가율 비교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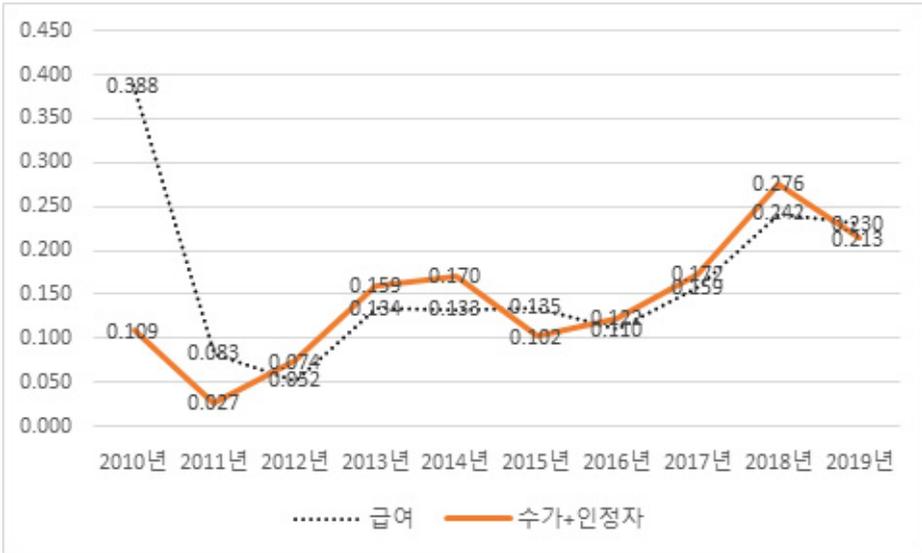


#### 나. 재정지출의 변동요인 분석

급여지출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급여지출, 보험수가, 인정자 수의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제도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08년과 2009년의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10년부터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지출의 증가는 인정자 수와 보험수가의 변동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정자 수 증가율과 보험수가 인상률을 합제한 수치와 급여지출의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변동하고 있음을 다음 〈그림 II-5〉에서 알 수 있다. 2015년과 2019년에는 보험수가 인상률과 인정자 수 증가율의 합이 급여지출 증가율보다 낮고, 그 외의 연도에서는 보험수가 인상률과 인정자 수 증가율의 합이 급여지출 증가율보다 높지만 전체적 추이는 유사하다. 이는 급여지출 증가가 급여 관련 보장성 측면에서 증가요인보다는 인정자 수의 증가와 보험수가의 증가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림 II-5〉 급여 증가율과 수가 인상률과 인정자 수 증가율의 합의 비교

(단위: 비율)



한편 인정자 수 증가는 노인인구 수 증가와 제도상의 인정률의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11년만 인정자 수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낮았고, 그 이외의 연도에서는 인정자 수 증가율이 높았다. 인정자 수 증가율에서 노인인구 증가율을 차감한 수치(인정기준이라 칭함)의 변동을 보면 2013년 이후 빠르게 높아져서 2018년과 2019년에는 더 높이 나타났다. 이는 제도상의 인정기준 완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지출의 증가가 높았던 최근 2019년을 보면, 급여지출의 증가율은 23.0%인데, 노인인구의 증가율 5.1%, 보험수가의 증가율 5.4%, 인정자 수의 증가율에서 노인인구 증가율을 차감한(인정기준) 증가율은 9.5%여서, 급여지출의 증가율과 이 세 가지 요인의 합계 차이는 3.0%였다. 3.0%는 설명되지 않은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주로 여러 가지 급여제도상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수가 인상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인력의 임금수준과 관계가 높는데, 2018년은 주로 국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II-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증가 요인의 분해

(단위: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인 수	0.034	0.036	0.049	0.046	0.044	0.040	0.033	0.053	0.041	0.051
인정기준	0.065	-0.009	0.004	0.059	0.075	0.060	0.076	0.069	0.101	0.095
보험수가	0.007	0.000	0.019	0.047	0.043	0.000	0.010	0.041	0.113	0.054
급여지출	0.388	0.083	0.052	0.134	0.133	0.135	0.110	0.159	0.242	0.230

총지출은 보험급여지출, 의료급여지출과 관리운영비의 합계이다. 의료급여지출은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보험급여지출에 상응하여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총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것이다. 급여항목별로 본인부담금 비율은 상이한데, 본인부담금 부분을 합하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액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비율은 20%이고, 방문급여의 본인부담비율은 15%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그 외 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용을 추가 감면한다.

###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면, 민영보험에는 간병보험이 있다.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나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에 의한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는데, 이의 판단기준은 보험사별 약관에 별도로 정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판정된 등급으로 하고 있다.

강성호·김혜란(2019)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5월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치매·간병보험을 9개 판매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장기 및 치매간병비의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간병보험 보유 계약은 2018년 현재 건수로는 26만 4천 건, 금액으로는 4조 5,390억 원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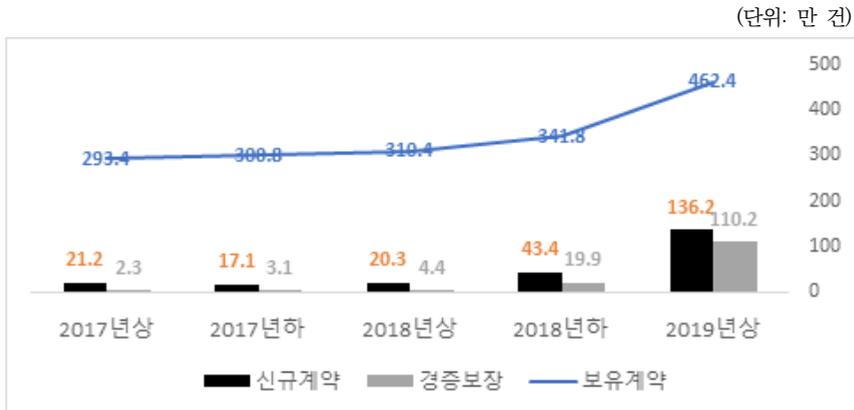
〈표 II-4〉 생명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실적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건수 (천 건)	금액 (십억 원)	건수 (천 건)	금액 (십억 원)	건수 (천 건)	금액 (십억 원)
보유계약	143	2,443	125 (-12.6)	1,588 (-35.0)	264 (111.2)	4,539 (185.8)
신계약	9	252	19 (-30.1)	218 (-1.3)	42 (20.7)	659 (7.1)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강성호·김혜란(2019)을 참조함

한국신용정보원의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의 신규 치매보험의 가입 건수는 136만 2,000건으로 2018년 하반기(43만 4,000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증 치매보험 가입은 19만 9,000건에서 110만 2,000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하였다.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민영보험에서 경증 치매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6〉 치매보험 가입 동향



자료: 김현경(2019)

---

##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수요 예측과 재정전망

---

###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분석 기초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요 예측 모형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통계에 기초가 되는 인구는 통계청의 2019년 전망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율과 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2020년 2월에 결정한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수와 인정자 수 및 급여항목별 수급자 등 제도 관련 동향 수치는 동 변수들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변화 추이를 기준으로 추산된다.

분석모형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모형은 급여지출을 산정하는 부분, 보험료율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 부분,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준비금을 산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항목별로 급여지출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두 번째 부분에서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료 수입 등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산정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정지출, 재정수입, 재정수지 준비금 등을 차례로 산정한다.

#### 가. 전제가정과 사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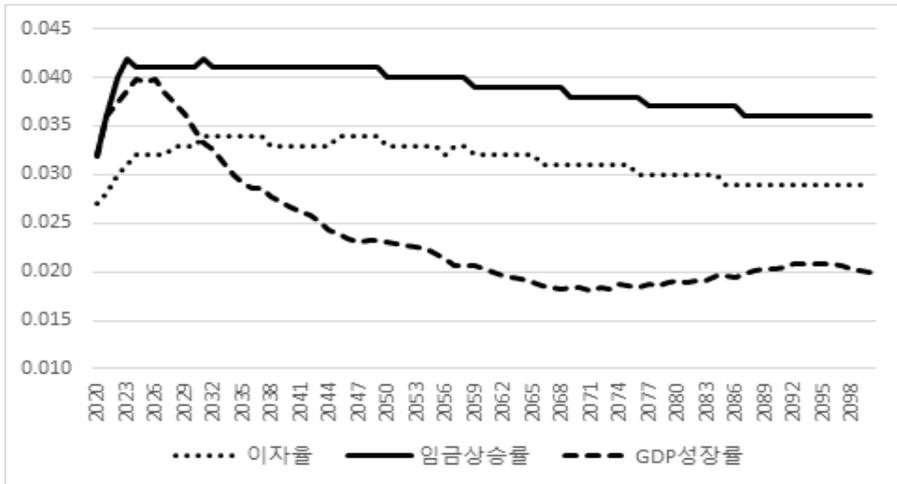
##### 1) 거시경제변수

재정수요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가정이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단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보험의 경우에는 이자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적으로 적립금을 높이 유

지할 경우에는 이자율의 중요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시경제변수는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2020년 2월에 결정한 가정을 사용한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자율과 임금상승률 모두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하락한다는 가정을 취하고 있다.

〈그림 III-1〉 거시경제변수 가정

(단위: 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장기전망협의회(2020. 2)

## 2) 인구 관련 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2019년 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른다. 참고로 통계청 추계 시에 가정되었던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을 제시한다.

〈표 III-1〉 통계청 출산율 및 기대수명 가정

인구변동요인	2017년	2021년			2067년			
		고위	중위	저위	고위	중위	저위	
합계출산율	1.05명	1.09명	0.86명	0.78명	1.45명	1.27명	1.10명	
기대수명	전체	82.7세	83.9세	83.4세	82.8세	91.1세	90.1세	88.9세
	남자	79.7세	81.0세	80.5세	80.0세	89.3세	88.5세	87.4세
	여자	85.7세	86.8세	86.3세	85.6세	92.8세	91.7세	90.4세
국제순이동	191천 명	109천 명	68천 명	28천 명	96천 명	35천 명	-23천 명	

자료: 통계청(2019)

## 나. 모형의 구성

### 1) 제도변수 가정

본 연구의 장기예측모형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 기초하여 제도를 모형화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보험계정과 의료급여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복지용구급여, 요양시설급여, 공동생활급여 등의 급여로 구성된다. 총지출에는 보험급여지출 의료급여지출 외에 관리운영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의 합이다. 보험료 수입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대상 가입자의 소득총액의 곱으로 결정된다.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의 20%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실제 지원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의료급여부담금은 의료급여 급여지출의 합계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 수입에는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도 함께 가산한다.

이들 제도와 관련 수입과 지출은 2014~2019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기초로 실제 통계에 따라 산정된다.

## 2) 모형 구조

본 연구의 모형은 급여항목별 지출 예측부분, 필요보험료 예측부분,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등 재정 예측부분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급여지출과 관리운영비 지출로 구성된다. 급여지출은 각 제도별 급여항목별로 최근의 지출 추이와 장기적 지출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관리운영비는 최근의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총수입은 보험료 수입, 국가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보험료 수입은 급여지출에 대해 재원조달 가능한 필요보험료를 산정하여 가입자 소득총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보험료는 현행 제도상의 부과방식 보험료 이외에 연령별 평준보험료<sup>2)</sup>와 종합보험료<sup>3)</sup>를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비교한다.

국고지원금은 현재의 정부지원 기준에 따라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의료급여부담금은 의료급여지출액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정한다. 재정 예측부분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구분하여 추계하고,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인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전년도 말 적립기금에 당년도 재정수지를 합한 금액으로 적립기금을 산출한다.

본 논문의 추계 대상기간은 2020년부터 2100년까지지만, 표로 제시하는 것은 2065년까지로 제한한다. 한편, 구체적인 모형 구조는 김용하(2020) 연구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 
- 2) 각 연령별로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생애기간 동안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수급할 확률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급여를 총당 가능하도록 한 보험료임
  - 3) 매년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수지균형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 총수입과 총지출을 균형시키는 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정기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임. 20년, 40년, 60년, 80년 균형보험료를 산정함

## 2.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20~2065년 기간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연평균 1.85%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집중되는 75세 이상 노인인구 수의 증가율은 2.68%로 크게 높다.

〈표 III-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인구 및 보험료 납입자 수

(단위: 명)

구분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75세 이상 인구	총가입자	65세 이상 가입자
2020	51,780,579	8,125,432	3,474,922	25,938,979	2,944,733
2021	51,821,669	8,537,023	3,546,089	26,113,497	3,126,601
2022	51,846,339	8,974,643	3,729,972	26,244,988	3,308,692
2023	51,868,100	9,447,274	3,911,422	26,343,110	3,510,571
2024	51,887,623	9,944,702	4,080,774	26,417,751	3,721,683
2025	51,905,126	10,511,160	4,259,046	26,458,138	3,951,735
2026	51,920,462	11,114,363	4,382,912	26,476,057	4,206,518
2027	51,933,215	11,589,115	4,589,582	26,471,170	4,399,752
2028	51,941,946	12,117,527	4,789,555	26,437,917	4,620,515
2029	51,940,598	12,517,340	4,996,463	26,387,366	4,770,858
2030	51,926,953	12,979,573	5,318,946	26,304,885	4,936,780
2035	51,629,895	15,237,275	7,087,943	25,760,752	5,752,481
2040	50,855,376	17,223,537	8,866,281	24,928,574	6,475,784
2045	49,574,038	18,329,352	10,328,618	23,836,550	6,855,239
2050	47,744,500	19,007,129	11,414,508	22,514,895	7,145,123
2055	45,405,902	18,814,803	11,708,616	21,175,370	7,120,749
2060	42,837,900	18,814,555	11,838,431	19,818,776	7,288,365
2065	40,293,293	18,569,631	11,446,151	18,471,048	7,266,02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급자 수 전망을 보면, 방문요양은 2020년에는 52만 6천 명에서 2065년에는 194만 1천 명으로 증가하여, 2020~2065년 기간 중 연평균 2.94%씩 증가하고, 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동 기간 중 2020년에는 22만 명에서 2065년

에는 83만 3천 명으로 연평균 3.0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75세 이상 인구 수의 증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III-3〉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요자 수 예측

(단위: 천 명)

구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요양 시설	공동 생활
2020	526	88	24	205	4	466	220	24
2021	550	92	25	214	4	488	231	26
2022	583	98	26	228	5	517	245	27
2023	614	103	28	241	5	545	258	29
2024	643	108	29	253	5	571	271	30
2025	674	113	31	265	5	599	283	31
2026	699	117	32	275	6	622	293	33
2027	735	124	34	290	6	655	309	34
2028	772	130	35	305	6	687	324	36
2029	803	135	37	318	6	716	336	37
2030	840	141	39	334	7	750	350	39
2035	1,050	177	48	426	8	940	433	48
2040	1,316	224	60	546	10	1,181	545	60
2045	1,586	272	73	672	13	1,430	671	74
2050	1,789	308	83	770	15	1,619	766	86
2055	1,905	328	89	832	16	1,731	821	92
2060	1,950	336	92	861	16	1,778	842	95
2065	1,941	333	92	864	16	1,774	833	94

〈표 III-4〉 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요 예측(방문 재가 서비스)

(단위: 억 원)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2020	43,745	1,431	379	20,797	135	2,647
2021	47,395	1,551	411	22,589	147	2,869
2022	52,152	1,709	453	24,965	163	3,159
2023	57,255	1,879	497	27,501	179	3,470
2024	62,381	2,046	543	30,011	195	3,783
2025	68,046	2,230	594	32,765	213	4,130
2026	73,515	2,404	644	35,359	230	4,466
2027	80,449	2,634	705	38,831	253	4,891
2028	87,823	2,877	771	42,503	277	5,343
2029	95,097	3,114	835	46,148	298	5,791
2030	103,602	3,393	910	50,438	323	6,315
2035	158,058	5,199	1,392	78,475	486	9,672
2040	241,246	7,998	2,119	122,917	748	14,802
2045	354,243	11,845	3,122	185,077	1,145	21,803
2050	487,110	16,350	4,315	259,390	1,615	30,074
2055	630,064	21,175	5,604	340,962	2,122	39,024
2060	782,154	26,263	7,010	428,250	2,663	48,600
2065	941,798	31,519	8,469	520,479	3,188	58,69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정소요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방문 재가 서비스 관련 비용의 증가와 요양시설 및 공동시설 등 시설 관련 비용의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비는 2020년에는 4조 3,745억 원에서 2065년에는 94조 1,798억 원으로 증가하여, 2020~2065년 기간 중 연평균 7.06%씩 증가하였다. 요양시설 이용 건수는 동기간 중 2020년에는 3조 9,189억 원에서 2065년에는 86조 465억 원으로 연평균 7.1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급여 단가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비가 동 기간 중 연평균 7.15%씩 증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5〉 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요 예측(시설 서비스)

(단위: 억 원)

구분	요양시설	공동생활	총급여
2020	39,189	3,666	111,988
2021	42,560	3,993	121,514
2022	46,879	4,400	133,879
2023	51,466	4,832	147,078
2024	56,071	5,274	160,305
2025	61,029	5,744	174,753
2026	65,735	6,196	188,549
2027	71,991	6,795	206,551
2028	78,520	7,415	225,529
2029	84,762	7,990	244,036
2030	91,956	8,641	265,579
2035	138,873	12,927	405,081
2040	213,141	19,823	622,794
2045	319,312	30,175	926,722
2050	444,241	42,408	1,285,502
2055	578,564	55,604	1,673,120
2060	719,518	69,539	2,083,998
2065	860,465	83,063	2,507,672

〈표 III-6〉 노인장기요양 재정수요 및 재원 분담구조 예측

(단위: 억 원)

구분	급여비용	공단지출	본인부담
2020	111,988	101,254	10,735
2021	121,514	109,862	11,652
2022	133,879	121,026	12,853
2023	147,078	132,947	14,132
2024	160,305	144,899	15,405
2025	174,753	157,956	16,797
2026	188,549	170,433	18,115
2027	206,551	186,688	19,863
2028	225,529	203,825	21,704
2029	244,036	220,538	23,498
2030	265,579	239,984	25,595
2035	405,081	365,839	39,243
2040	622,794	562,089	60,705
2045	926,722	835,911	90,811
2050	1,285,502	1,159,175	126,328
2055	1,673,120	1,508,379	164,741
2060	2,083,998	1,878,573	205,425
2065	2,507,672	2,260,277	247,395

###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전망

2020~2065년의 재정지출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은 10.1조 원, 관리운영비는 0.6조 원으로 총지출은 10.7조 원으로 예상된다. 급여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5년에는 15.8조 원, 2030년에는 24조 원으로, 2050년에는 116조 원으로, 추계의 마지막 연도인 2065년에는 22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65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7.1%가 된다. 이와 같은 급여지출의 증가는 노인인구 수 증가, 보험수가 인상, 인정률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0.54%이지만, 2033년에

는 1.0%, 2045년에는 2.0%, 2056년에는 3.0%를 초과하여, 2065년에는 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지출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직장가입자 기준)은 2020년의 0.68%(실제 적용기준 보험료율)에서, 2024년에 1.0%, 2036년에 2.0%, 2042년에 3.0%, 2048년에 4%를, 2055년에 5%를 초과하여, 2065년에는 6.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지원금도 이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할 때, 보험료 수입은 2020년 7.2조 원에서 2065년에는 160.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고지원금은 2020년 1.7조 원에서 2065년 32.1조 원으로 증가하고, 의료급여부담금은 2020년 2.1조 원에서 2065년 46.3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총지출	요양급여비	관리운영비
2020	107,178	101,436	5,742
2021	116,291	110,060	6,230
2022	128,108	121,245	6,863
2023	140,726	133,187	7,540
2024	153,378	145,161	8,218
2025	167,199	158,241	8,958
2026	180,407	170,741	9,666
2027	197,612	187,024	10,588
2028	215,752	204,192	11,560
2029	233,444	220,936	12,508
2030	254,029	240,417	13,612
2035	387,252	366,498	20,754
2040	594,994	563,102	31,892
2045	884,850	837,419	47,431
2050	1,227,044	1,161,265	65,778
2055	1,596,699	1,511,099	85,600
2060	1,988,577	1,881,961	106,616
2065	2,392,645	2,264,354	128,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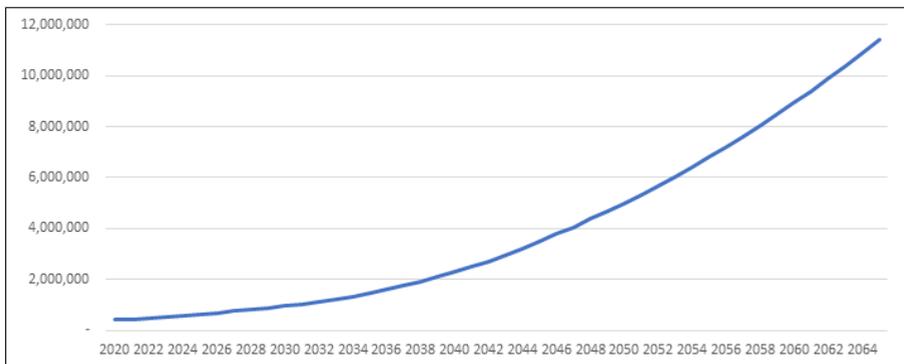
〈표 III-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입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총수입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의료급여부담금	기타수입
2020	107,178	71,673	17,213	21,025	1,500
2021	116,291	77,821	15,564	22,811	1,628
2022	128,108	85,736	17,147	25,121	1,794
2023	140,726	94,188	18,838	27,587	1,970
2024	153,378	102,660	20,532	30,063	2,147
2025	167,199	111,916	22,383	32,765	2,341
2026	180,407	120,759	24,152	35,350	2,526
2027	197,612	132,284	26,457	38,711	2,767
2028	215,752	144,438	28,888	42,252	3,021
2029	233,444	156,299	31,260	45,697	3,269
2030	254,029	170,105	34,021	49,698	3,558
2035	387,252	259,473	51,895	75,572	5,426
2040	594,994	398,870	79,774	115,871	8,340
2045	884,850	593,329	118,666	172,143	12,405
2050	1,227,044	822,985	164,597	238,476	17,205
2055	1,596,699	1,071,190	214,238	309,991	22,392
2060	1,988,577	1,334,407	266,881	385,694	27,893
2065	2,392,645	1,606,080	321,216	463,434	33,568

〈그림 III-2〉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보험료 전망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 증가 원인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함께 75세 이상 고위험군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노인인구 수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금액 측면의 증가요인은 임금상승률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정상화되면 지출의 증가속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급여지출과 일부 중첩되고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환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은 더 증가될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공급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민간에 맡겨져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험수가를 통제하고 있지만, 요양보험의 이용자 수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본인부담률(deductible)인데 현재의 본인부담률이 15~20%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향 조정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수준으로 급여지출의 증가를 장기적으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보험 재정방식의 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 IV.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 형평성

---

### 1. 보험료 부담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그 당시의 급여지출을 충당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21~2065년 기간 중 연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급여지출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 본 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증가 자체보다는 증가된 보험료가 그 당시 세대의 입장에서 수용가능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연령계층이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노년계층을 부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은 큰 문제가 없지만,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출생아 수가 급속하게 감소되는 인구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궁극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대 간 공평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령별 평준보험료율을 산정하였다. <표 IV-1>과 <표 IV-2>는 연도별, 연령별 평준보험료율을 성별로 각각 산정한 것이다. 남자 기준으로 볼 때, 2021년의 남성 25세 연령의 평준 연보험료는 86만 원이고, 30세는 93만 원, 35세는 103만 원으로 산정된다. 여성 25세 연령의 평준 연보험료는 208만 원, 30세는 228만 원, 35세는 255만 원으로 산정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평준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어서 노인성질환의 유병률도 높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제도로서 연도별로 부과되는 필요보험료와 비교할

평균보험료의 기준 연령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입사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25세로 정하여 비교하였다. 즉, 25세 연령에 입직하여 64세 연령에 퇴직한다고 보고, 25세부터 64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일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연도별 평균 연보험료는 높아진다. 2021년 남자 기준은 86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04만 원, 2030년에는 131만 원, 2040년에는 208만 원, 2050년에는 327만 원, 2060년에는 506만 원, 2065년에는 625만 원으로 높아진다(〈표 IV-1〉 참조). 이는 통계청의 인구전망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수명은 2021년 80.5세에서 2067년 88.5세로 연장되고, 여자의 평균수명은 2021년 86.3세에서 2067년 91.7세로 연장된다. 즉,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동일 연령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출생한 사람의 평균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부과방식의 필요보험료는 평균보험료보다 낮지만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의 상승이 평균보험료의 상승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25세 남녀 평균 연평균보험료 기준의 보험료와 비교할 때, 2046년경에 부과방식 필요보험료가 25세 기준 평균보험료를 추월하게 된다(〈그림 IV-6〉 참조). 따라서 2040년경 후반을 넘어서면 적립방식 성격의 평균보험료보다 부과방식의 필요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보험료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평균보험료보다 높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저항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평균보험료의 비교는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험료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세대 전체의 평균보험료 개념이므로 실제 개인별 보험료의 격차라기보다는 세대별 보험료 평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 평준보험료(65세 미만 해당 연령 신규가입자 기준, 남자)

(단위: 원)

구분	남 25세	남 30세	남 35세
2021	861,280	931,669	1,025,245
2022	902,039	976,289	1,075,144
2023	946,511	1,024,962	1,129,560
2024	992,187	1,075,030	1,185,496
2025	1,039,982	1,127,459	1,244,102
2026	1,089,951	1,182,334	1,305,484
2027	1,142,202	1,239,754	1,369,659
2028	1,196,878	1,299,896	1,436,896
2029	1,253,968	1,362,827	1,507,328
2030	1,313,688	1,428,662	1,581,062
2035	1,657,135	1,806,879	2,005,976
2040	2,083,608	2,276,825	2,534,209
2045	2,615,780	2,863,716	3,194,494
2050	3,274,536	3,592,034	4,014,441
2055	4,076,947	4,478,782	5,015,345
2060	5,058,825	5,565,363	6,241,029
2065	6,251,352	6,885,174	7,731,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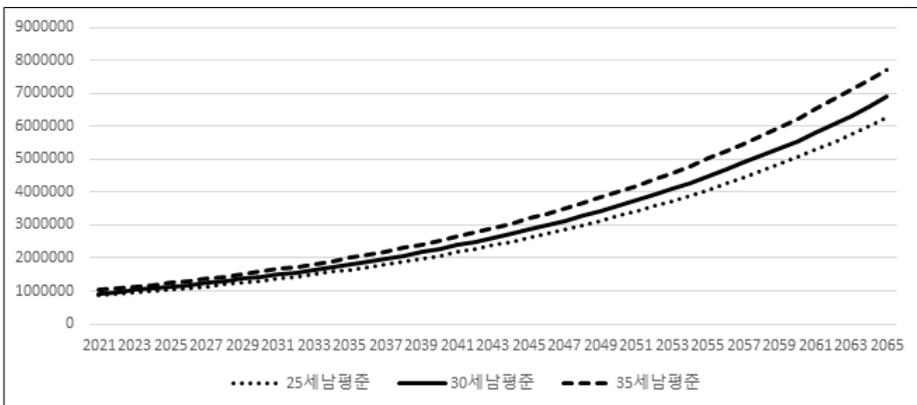
〈표 IV-2〉 평균보험료(65세 미만 해당 연령 신규가입자 기준, 여자)

(단위: 원)

구분	여 25세	여 30세	여 35세
2021	2,078,524	2,280,732	2,549,303
2022	2,170,987	2,382,788	2,664,577
2023	2,271,868	2,494,210	2,790,350
2024	2,375,252	2,608,399	2,919,271
2025	2,483,347	2,727,858	3,053,915
2026	2,596,185	2,852,690	3,194,712
2027	2,714,046	2,983,143	3,341,735
2028	2,837,034	3,119,437	3,495,484
2029	2,965,474	3,261,895	3,656,142
2030	3,099,523	3,410,804	3,824,162
2035	3,867,238	4,262,459	4,787,846
2040	4,813,876	5,312,657	5,976,929
2045	5,988,063	6,615,419	7,452,513
2050	7,433,372	8,222,090	9,272,218
2055	9,183,154	10,166,218	11,478,493
2060	11,314,245	12,534,865	14,164,680
2065	13,888,893	15,398,019	17,412,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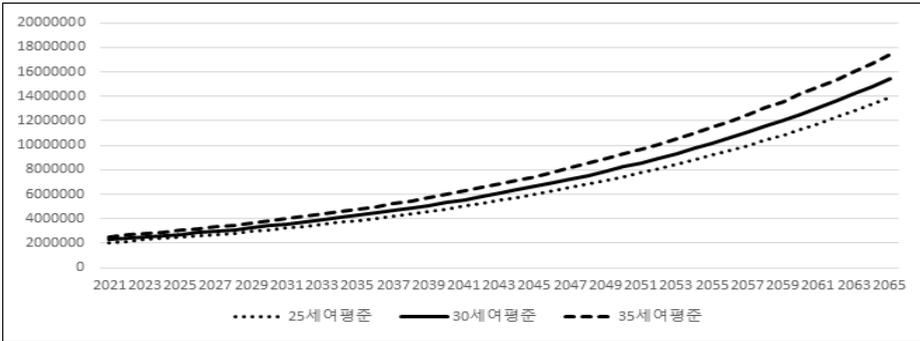
〈그림 IV-1〉 평균보험료(남자 연령별) 비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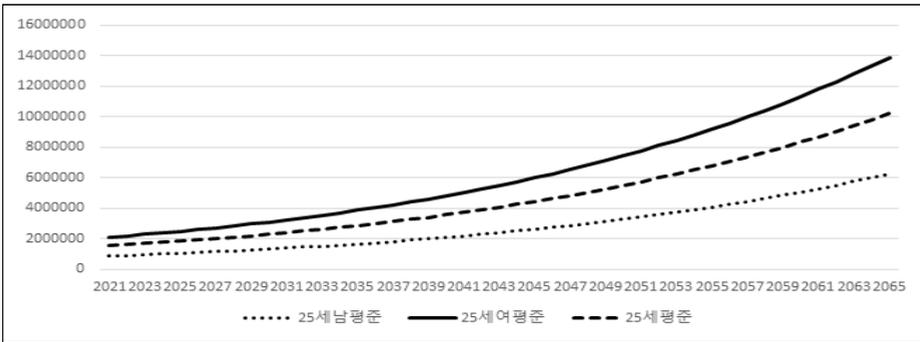
〈그림 IV-2〉 평균보험료(여자 연령별) 비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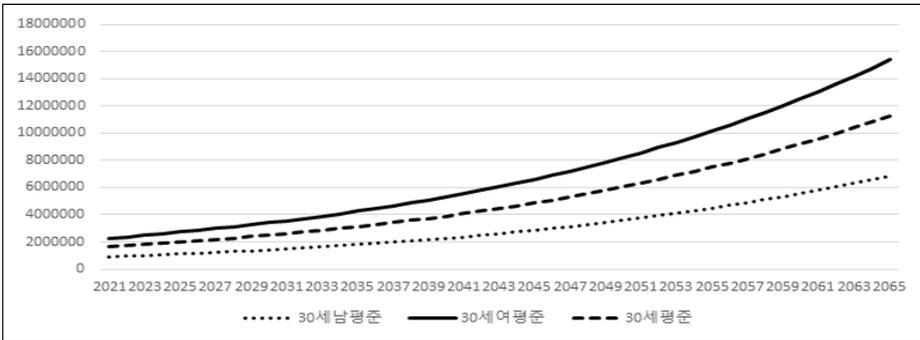
〈그림 IV-3〉 평균보험료(25세 가입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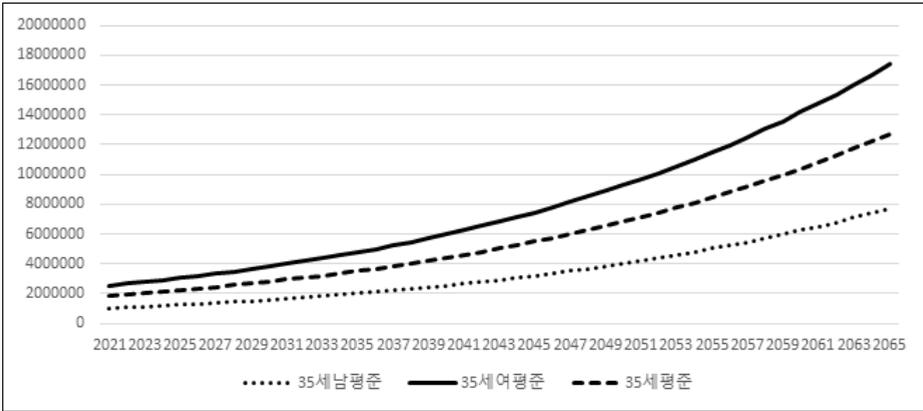
〈그림 IV-4〉 평균보험료(30세 가입 기준)

(단위: 원)



〈그림 IV-5〉 평준보험료(35세 가입 기준)

(단위: 원)



부과방식하에서 보험료가 적립방식하의 평준보험료율보다 높지 않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금이 많이 누적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적립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완전 적립방식인 연령별 평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단년도 회계기준으로 수지균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제도를 수지균형의 대상기간을 1년에서 다년간으로 확대하는, 즉 종합보험료방식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먼저 연령별 평준보험료방식을 적용하면 현행 부과방식 보험료보다 현 시점에서는 보험료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38만 원 상당인 현재의 부과방식 보험료가 25세 남자기준으로는 86만 원, 25세 여자기준으로는 208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30세 남자기준으로는 93만 원, 30세 여자기준으로는 228만 원으로 높아져야 한다(〈표 IV-1〉, 〈표 IV-2〉 참조),

종합보험료방식은 수지 균형기간을 20년, 40년, 60년, 80년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 해보았다. 20년 기간 균형 종합보험료 방식에 의하면 보험료가 2021년에는 65만 원,

4)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적립성격을 가진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적립금을 높이는 방식으로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가상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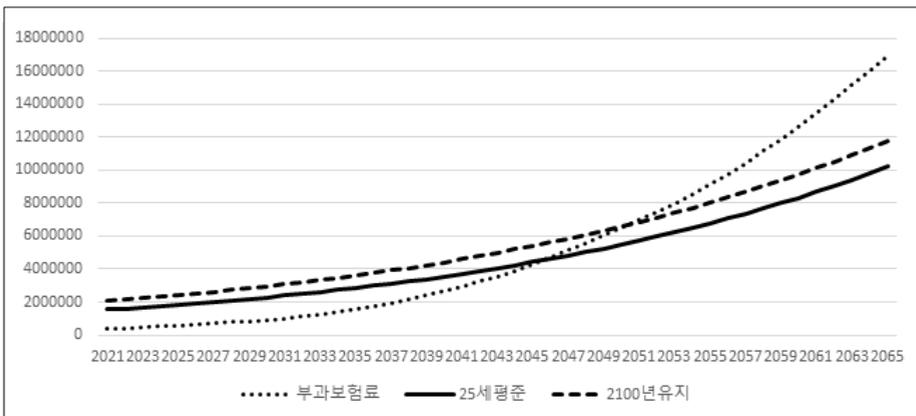
2030년에는 156만 원, 2050년에는 731만 원으로 높아져야 한다. 60년 기간 균형 종합 보험료 방식에 의하면 보험료가 2021년에는 159만 원, 2030년에는 286만 원, 2050년에는 851만 원으로 높아져야 한다(〈표 IV-3〉 참조).

종합보험료방식의 경우, 균형기간이 20년보다는 40년이, 40년보다는 60년이, 60년보다는 80년인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적립금의 적립배율도 함께 높아져 적립기금 고갈의 발생 없이 지속가능하지만, 본 모형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변수들이 일정수준으로 정상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필요보험료율에 근접하게 된다. 물론, 적립금이 많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장래 일정기간까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하여 보았다. 적립기금이 2090년까지 유지되는 방안과 210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90년 유지방안은 2021년에 보험료를 195만 원으로, 2100년 유지방안은 20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표 IV-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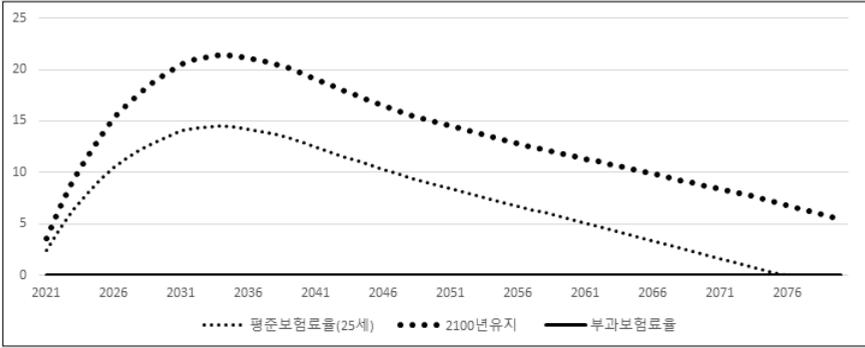
〈그림 IV-6〉 재정방식별 보험료 전망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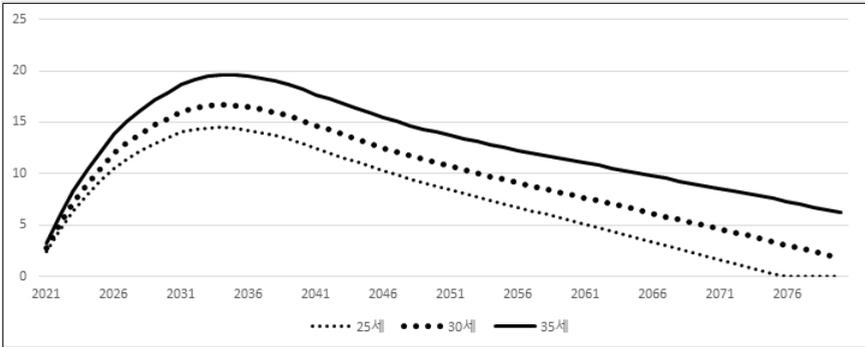
〈그림 IV-7〉 재정방식별 적립기금 전망

(단위: 배울)



〈그림 IV-8〉 연령별 평균보험료 부과 시 재정전망

(단위: 배울)



〈표 IV-3〉 종합보험료(균형기간별)

(단위: 원)

구분	20년 균형	40년 균형	60년 균형	80년 균형
2021	650,925	1,166,558	1,591,634	1,850,447
2022	718,127	1,263,162	1,701,042	1,959,243
2023	793,412	1,369,177	1,820,530	2,078,010
2024	875,590	1,481,418	1,945,499	2,201,448
2025	965,853	1,601,416	2,077,730	2,331,683
2026	1,065,093	1,729,655	2,217,395	2,468,928
2027	1,174,388	1,866,762	2,364,863	2,613,579
2028	1,293,560	2,013,059	2,520,230	2,765,943
2029	1,423,365	2,168,746	2,683,686	2,926,244
2030	1,564,619	2,334,511	2,855,784	3,095,061
2035	2,458,115	3,330,830	3,858,995	4,079,630
2040	3,683,592	4,634,581	5,110,968	5,305,547
2045	5,288,990	6,295,828	6,651,607	6,808,287
2050	7,311,459	8,298,367	8,509,774	8,615,553
2055	9,781,603	10,628,654	10,708,397	10,751,152
2060	12,827,789	13,344,826	13,299,498	13,273,765
2065	16,467,435	16,449,960	16,294,620	16,209,297

〈표 IV-4〉 부과방식 필요보험료 및 목표연도 기금유지 필요보험료

(단위: 원)

구분	부과방식보험료	2090년 유지보험료	2100년 유지보험료
2021	378,121	1,947,631	2,057,441
2022	429,705	2,025,536	2,139,739
2023	476,106	2,110,609	2,229,608
2024	524,593	2,197,144	2,321,022
2025	579,856	2,287,227	2,416,184
2026	634,770	2,381,003	2,515,247
2027	703,079	2,478,624	2,618,372
2028	778,222	2,580,248	2,725,726
2029	851,313	2,686,038	2,837,480
2030	938,777	2,796,165	2,953,817
2035	1,561,295	3,421,633	3,614,550
2040	2,662,329	4,182,993	4,418,836
2045	4,294,900	5,113,765	5,402,086
2050	6,499,505	6,245,641	6,597,779
2055	9,120,927	7,598,777	8,027,207
2060	12,630,856	9,227,304	9,747,553
2065	16,985,943	11,172,557	11,802,481

##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부가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연령별로 진료비 수급액이 모두 상이하고, 연령별 수급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도 차이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수급자는 65세 이상자이거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는 반면에 보험료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과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령별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의 구성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65세 이상자는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에만 부과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료 부담자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크게 상이하야, 결과적으로 세대 간 부양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세대 간 부양구조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적립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전적으로 세대 간 부양구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없는 데 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 간 부양의 성격을 국민연금보다 더 강하게 띠고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계급별 성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연령계급별 성별 부과보험료를 산정하여 보았다. 2021년 남자 기준으로 65~69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17만 원, 70~74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31만 원, 75~79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63만 원, 80~84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121만 원, 85세 이상 연령계급 보험료는 250만 원이었다(표 IV-5 참조). 2021년 여자 기준으로 65~69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17만 원, 70~74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43만 원, 75~79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127만 원, 80~84세 연령계급 보험료는 286만 원, 85세 이상 연령계급 보험료는 483만 원이었다(표 IV-6 참조).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그림 IV-9>에서 <그림 IV-15>까지는 <표 IV-5>와 <표 IV-6>을 각 연령별 남녀, 연령별 남자, 연령별 여자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IV-5〉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남자)

(단위: 원)

구분	남 65세	남 70세	남 75세	남 80세	남 85세
2021	173,702	314,766	625,827	1,207,265	2,497,029
2022	180,988	327,794	651,839	1,257,495	2,600,346
2023	188,941	342,016	680,237	1,312,331	2,713,142
2024	197,054	356,512	709,188	1,368,241	2,828,108
2025	205,515	371,622	739,370	1,426,529	2,947,941
2026	214,338	387,371	770,835	1,487,297	3,072,846
2027	223,539	403,788	803,638	1,550,649	3,203,037
2028	233,135	420,899	837,834	1,616,697	3,338,739
2029	243,141	438,735	873,483	1,685,553	3,480,184
2030	253,576	457,326	910,647	1,757,339	3,627,616
2035	313,151	563,311	1,122,616	2,166,817	4,468,093
2040	386,320	693,162	1,382,522	2,668,990	5,497,786
2045	476,545	852,910	1,702,509	3,287,361	6,764,495
2050	587,232	1,048,422	2,094,434	4,044,886	8,314,721
2055	720,793	1,283,754	2,566,562	4,957,605	10,180,586
2060	882,964	1,568,823	3,138,911	6,064,270	12,440,702
2065	1,078,423	1,911,593	3,827,639	7,396,201	15,158,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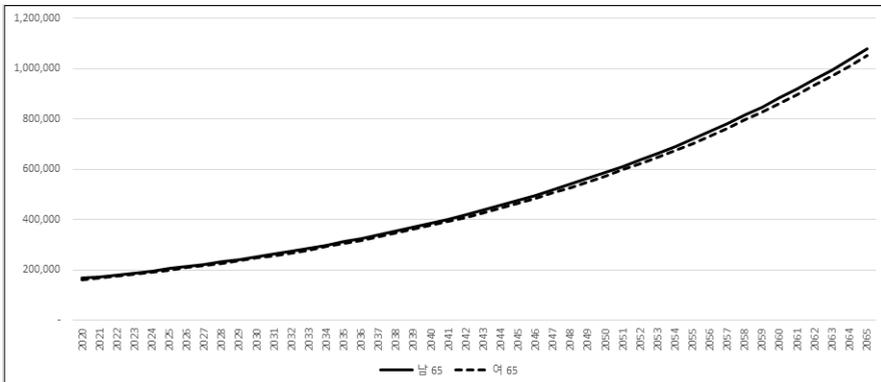
〈표 IV-6〉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여자)

(단위: 원)

구분	여 65세	여 70세	여 75세	여 80세	여 85세
2021	169,484	426,678	1,269,110	2,860,611	4,832,757
2022	176,597	444,389	1,322,518	2,981,173	5,031,335
2023	184,362	463,724	1,380,819	3,112,776	5,248,140
2024	192,283	483,436	1,440,300	3,247,057	5,469,027
2025	200,544	503,984	1,502,337	3,387,116	5,699,206
2026	209,158	525,405	1,567,040	3,533,202	5,939,065
2027	218,142	547,735	1,634,524	3,685,572	6,189,012
2028	227,511	571,013	1,704,907	3,844,498	6,449,472
2029	237,282	595,279	1,778,314	4,010,261	6,720,886
2030	247,472	620,574	1,854,874	4,183,153	7,003,714
2035	305,648	764,831	2,292,115	5,170,706	8,614,850
2040	377,105	941,668	2,829,438	6,384,624	10,586,161
2045	465,230	1,159,334	3,492,397	7,882,755	13,008,218
2050	573,351	1,425,873	4,306,158	9,722,129	15,971,083
2055	703,831	1,746,876	5,288,687	11,943,568	19,539,852
2060	862,276	2,135,931	6,482,342	14,643,025	23,859,381
2065	1,053,263	2,603,985	7,921,824	17,899,241	29,048,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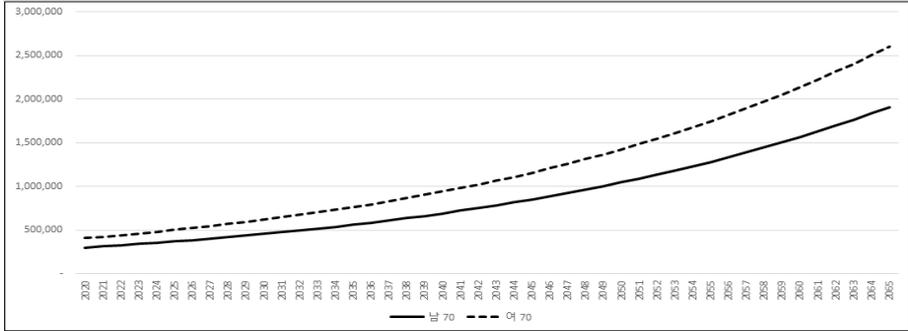
〈그림 IV-9〉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65세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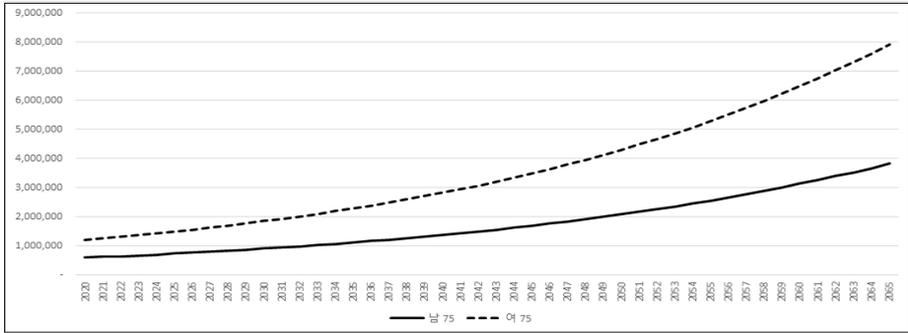
〈그림 IV-10〉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70세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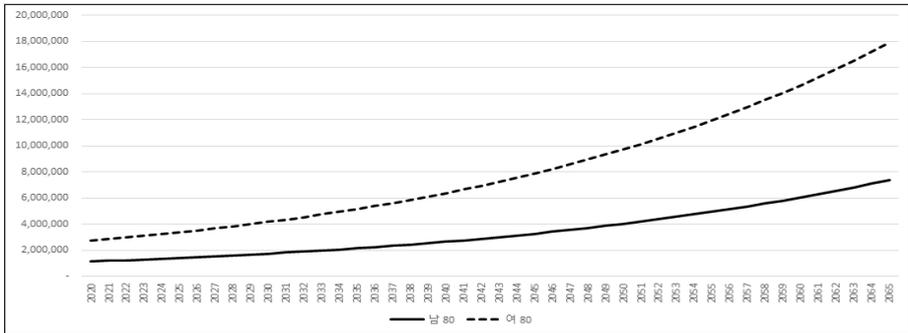
〈그림 IV-11〉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75세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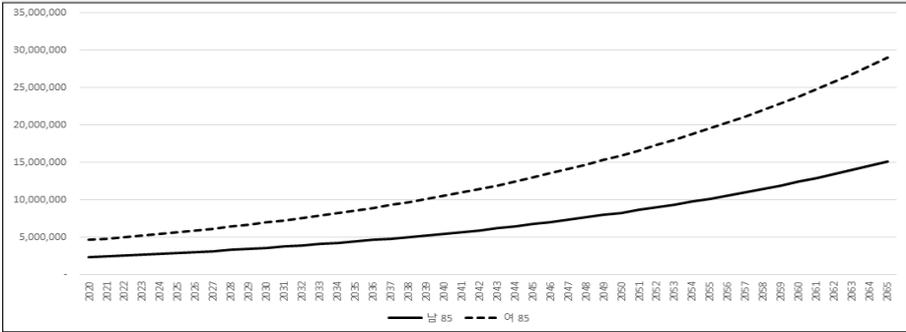
〈그림 IV-12〉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80세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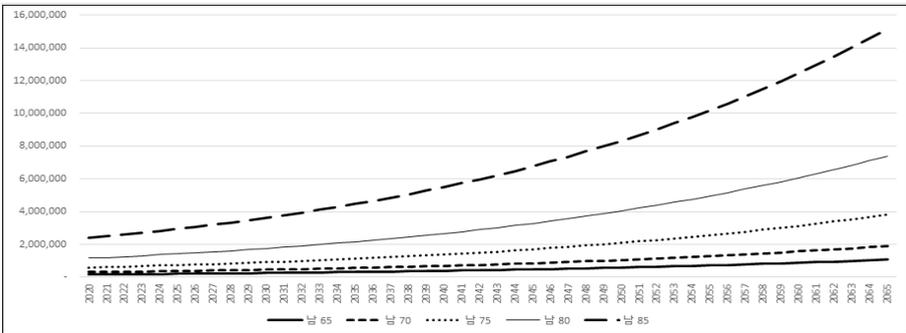
〈그림 IV-13〉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85세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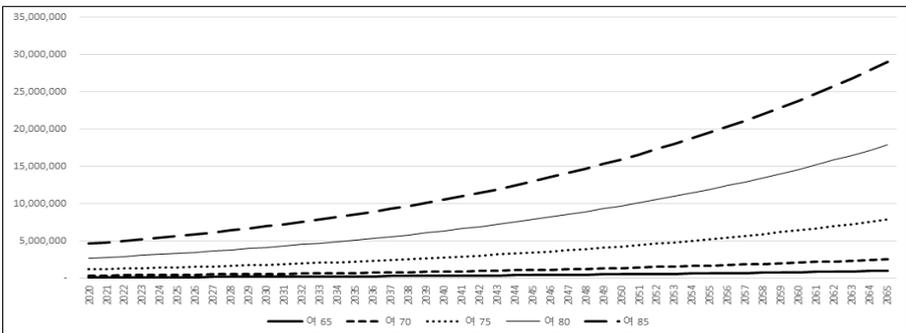
〈그림 IV-14〉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연령별 남자)

(단위: 원)



〈그림 IV-15〉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연령별 여자)

(단위: 원)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 대상자는 노인이기 때문에 노령계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할 때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65세 이상자 남녀별로 단일보험료를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할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남자는 44만 원, 여자는 125만 원을 부과해야 하고, 남녀 동일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74만 원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 참조).<sup>5)</sup> 65세 이상 전체 인구 기준으로 2021년에 남자는 23만 원, 여자는 30만 원, 남녀 평균 27만 원의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표 IV-9〉 참조). 현행 제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 2021년 기준으로 남자는 5만 원, 여자는 14만 원, 남녀 평균 9만 원의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표 IV-8〉 참조). 현행 제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전체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65세 이상 요양급여 수급 가능 연령층 내에 있는 대상자 중 보험료 납입 가능자 혹은 65세 이상 계층 전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요양급여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낮게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16〉에서 〈그림 IV-18〉까지는 〈표 IV-7〉에서 〈표 IV-9〉까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 혹은 피부양자이거나 지역 가입자로 분류됨.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것임

〈표 IV-7〉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65세 이상 가입자)

(단위: 원)

구분	65세 이상 남자 단일보험료	65세 이상 여자 단일보험료	65세 이상 단일보험료
2021	440,926	1,252,564	739,592
2022	464,076	1,330,851	784,008
2023	486,319	1,404,332	825,719
2024	506,251	1,467,967	861,808
2025	527,715	1,531,055	898,522
2026	544,475	1,577,585	925,228
2027	576,076	1,681,623	984,913
2028	606,068	1,776,781	1,039,842
2029	639,876	1,873,899	1,098,146
2030	678,358	1,982,681	1,164,372
2035	912,573	2,689,412	1,588,856
2040	1,250,097	3,772,517	2,239,098
2045	1,759,028	5,422,966	3,251,744
2050	2,353,800	7,313,751	4,429,091
2055	3,110,464	9,653,255	5,911,957
2060	3,866,396	12,083,379	7,409,029
2065	4,784,950	14,941,863	9,181,313

〈표 IV-8〉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건강보험가입자 전체)

(단위: 원)

구분	남자 단일보험료	여자 단일보험료	전체 단일보험료
2021	54,431	142,598	88,552
2022	60,174	160,189	98,840
2023	66,533	179,226	110,038
2024	73,144	198,369	121,410
2025	80,770	219,625	134,201
2026	88,683	240,533	147,000
2027	97,894	269,443	163,702
2028	108,097	300,259	181,732
2029	117,811	328,782	198,546
2030	129,313	362,647	218,524
2035	204,517	597,059	354,798
2040	321,309	996,511	581,658
2045	490,850	1,632,337	935,181
2050	716,208	2,468,448	1,405,576
2055	993,073	3,494,757	1,988,044
2060	1,351,058	4,773,800	2,724,674
2065	1,791,237	6,297,076	3,611,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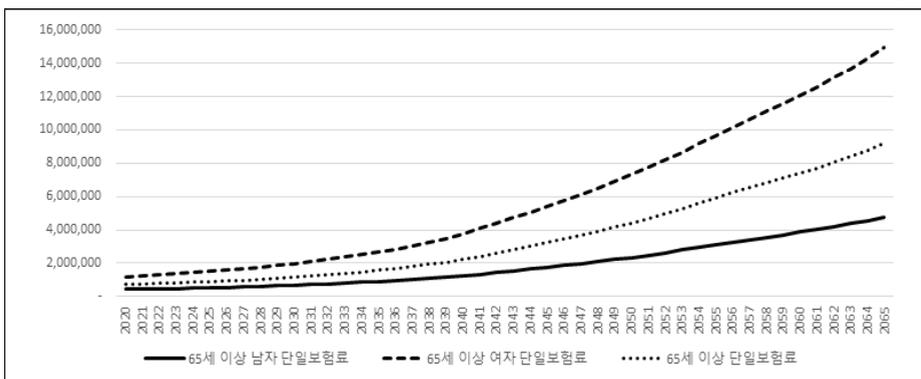
〈표 IV-9〉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65세 이상 전체 인구)

(단위: 원)

구분	65세 이상 전체 남자	65세 이상 전체 여성	65세 이상 남녀 평균
2021	234,678	298,721	270,868
2022	246,691	321,987	289,041
2023	258,619	344,783	306,834
2024	269,691	364,501	322,521
2025	281,222	383,129	337,805
2026	291,210	397,808	350,177
2027	307,148	428,267	373,917
2028	322,523	457,283	396,501
2029	338,862	484,390	418,547
2030	356,789	514,356	442,869
2035	465,782	713,176	599,836
2040	619,659	1,032,002	841,866
2045	843,208	1,536,883	1,216,163
2050	1,106,394	2,150,717	1,664,975
2055	1,433,855	2,948,588	2,237,470
2060	1,785,170	3,860,715	2,870,103
2065	2,201,171	4,889,302	3,59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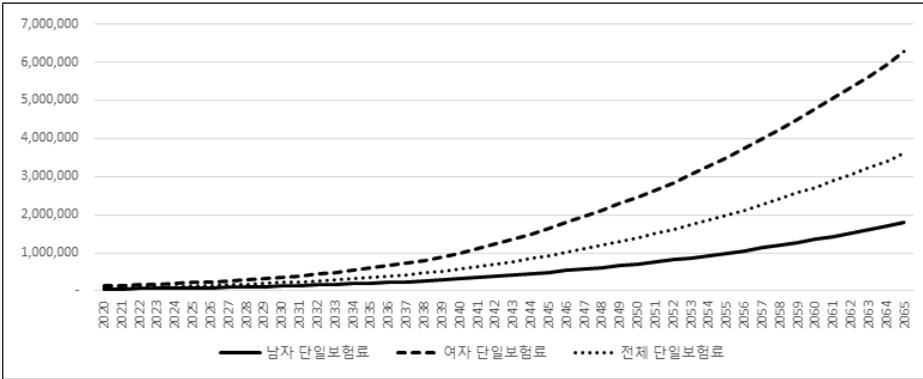
〈그림 IV-16〉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65세 이상 가입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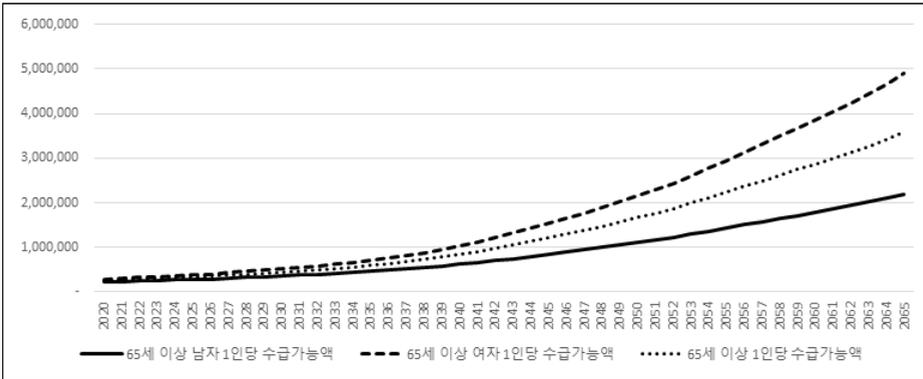
〈그림 IV-17〉 연령별 재정소요를 반영한 보험료(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단위: 원)



〈그림 IV-18〉 재정소요를 반영한 단일보험료(65세 이상 전체 인구)

(단위: 원)



### 3. 분석결과의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요추계에 기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보험료를 분석해보았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급속히 높아지는 것은 앞의 장에서 분석되었지만, 본 장에서는 현행 부과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준과 적립방식에 기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현재는 부과방식에 기초한 보험료가 적립방식에 기초한 보험료보다 낮지만, 부과방식에 기초한 보험료의 급속한 상승으로 2046년경에는 적립방식에 기초한 보험료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경에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미래세대는 현행 보험료 방식의 보험료 수준이 본인이 장래에 수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방식을 현재와 같이 완전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적 요소가 강화된 재정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평준보험료, 기간별 종합보험료, 기금고갈연도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단일보험료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 적립방식 성격의 보험료 산정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데, 보험료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현행 제도상에서 보험료 부과를 연령별, 성별로 부과할 경우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보험료는 수급자별로 요양서비스 수급액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보험료로 판단된다. 보험료 차이만큼을 세대 간 소득 이전, 즉 세대 간 부양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행 재정방식을 적립금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보험료가 대폭 상승되어야 함을 인식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 V.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 1. 주요국의 공·사 간 역할분담 사례와 시사점

### 가. 일본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당시 중요한 참고 대상 국가였다. 따라서 등급기준 등 제도의 기본 틀은 우리나라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납입자는 4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보장 대상자는 5등급으로 구분되나 65세 이상에 대한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인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2015년 개호보험 제1호 피보험자 수는 3천 382만 명이었으며, 이 중 65~75세 미만은 51.6%, 75세 이상은 48.4%로 나타났다.<sup>6)</sup>

〈표 V-1〉 일본의 연도별 제1호 피보험자 수 추이(연도 말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65~75세 미만		75세 이상		계
2000	13,192	(58.8%)	9,231	(41.2%)	22,422
2005	14,125	(54.6%)	11,753	(45.4%)	25,878
2010	14,827	(50.9%)	14,283	(49.1%)	29,110
2015	17,449	(51.6%)	16,366	(48.4%)	33,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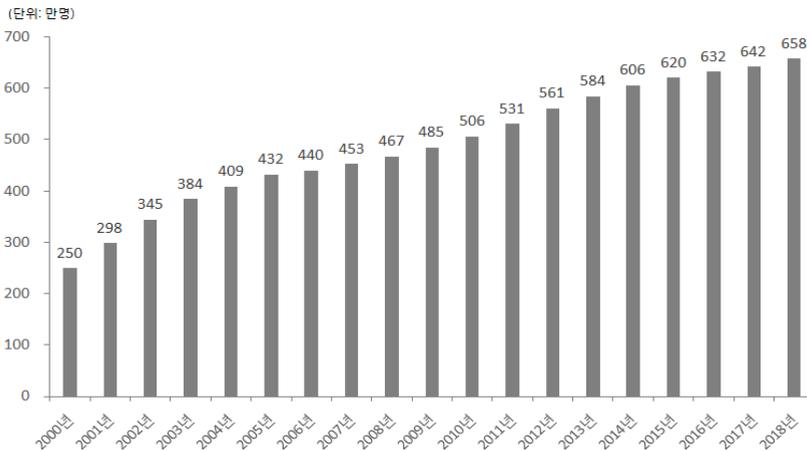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2017); 김민경 외(2017), p. 78

---

6) 강성호·김혜란(2019)

일본의 개호보험 인정자 수는 2000년 250만 명에서 2018년 658만 명으로 연평균 5.5%씩 증가하고 있다.<sup>7)</sup> 이를 노인인구 대비 요개호 인정자 비율로 보면, 2018년 18.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1〉 일본의 요개호 인정자 수(당해년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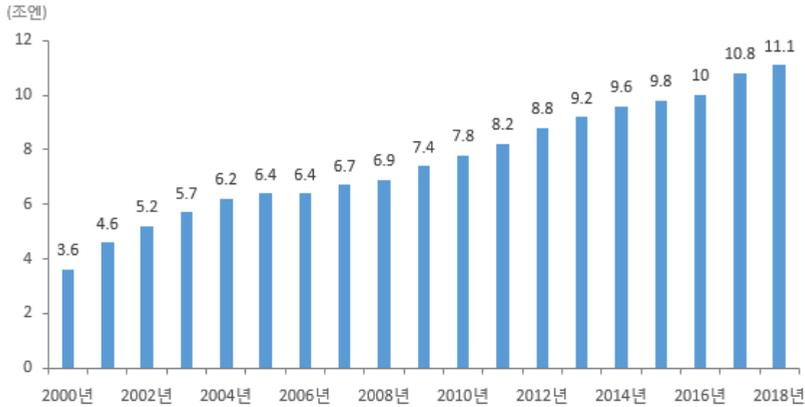
주: 제1호 및 제2호 피보험자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요개호 인정자 수임  
 자료: 厚生労働省, 각 연도: 강성호·김혜란(2019)

개호급여는 재가서비스, 재가개호지원, 지역밀착형서비스, 시설서비스로 구성되며, 개호예방급여는 개호예방서비스, 개호예방지원,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로 구성된다.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항목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보험 재원 분담을 보면, 보험료로 50%, 중앙정부 25%(조정교부금 5% 포함), 도도부현에서 12.5%, 시정촌에서 12.5%이다. 총지출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에는 3.6조 엔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1.1조 엔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연평균 6.46%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7) 강성호·김혜란(2019)

〈그림 V-2〉 일본 개호보험의 총지출



주: 개호 보험에 관한 사무비용과 인건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http://www.nli-research.co.jp>; 강성호·김혜란(2019)에서 재인용함

일본의 민영 간병보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간병보험·개호특약 가입률은 2018년 가구 기준으로 14.1%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의 민영 간병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개호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V-2〉 일본의 간병보험·개호특약 가입률

(단위: %)

구분	전체 <sup>1)</sup> 생명보험	민영 <sup>2)</sup> 생명보험	간병보험·개호특약 <sup>3)</sup>		
			가구	세대주	배우자
2006년	90.3	76.4	16.1	12.9	7.3
2009년	90.3	76.2	13.7	11.1	6.2
2012년	80.5	78.4	14.2	10.8	7.6
2015년	89.2	78.6	15.3	11.8	7.9
2018년	88.7	79.1	14.1	10.5	7.8

주: 1) 민영생명보험 + 간포생명보험 + 간이보험 + JA + 공제 및 생협

2) 간포생명보험을 포함한 민영생명보험임

3) 간포생명보험을 제외함

4) 2018년 4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가구원 2인 이상의 일반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방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강성호·김혜란(2019)에서 재인용함

## 나. 독일

독일 요양보험은 일본 개호보험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측면에서 보완적 성격과 함께 대체보험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중요한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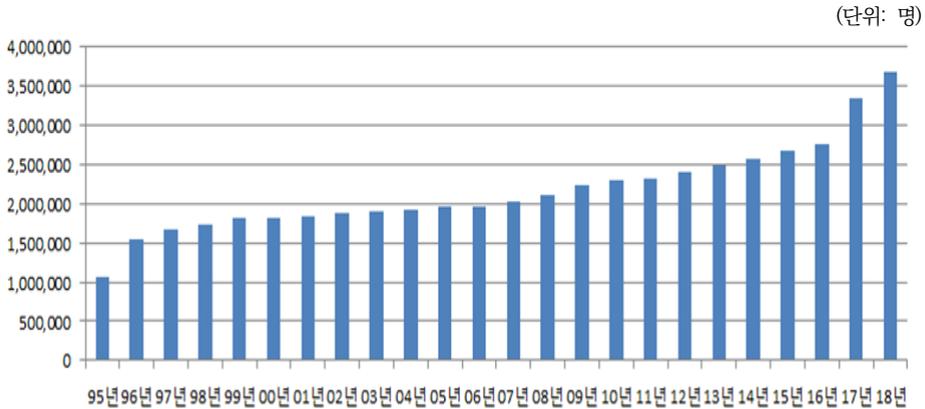
독일 역시 장기요양 대상자 가족의 인적 물적 비용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등으로 1995년에 독립적인 요양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가 도입되었다. 독일은 공적 요양보험(Social Long Term Care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Compulsory Private Long Term Care insurance)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은 고소득층·자영업자 그리고 공무원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두 제도의 가입대상을 구분하는 소득기준(2019년)은 월 소득 5,062.50유로 또는 연간수입 60,750유로(휴일 및 크리스마스 보너스 포함)이다. 한편, 대체형 민영보험 이외에 임의로 가입가능한 보충형 민영 요양보험(Voluntary Private Supplementary)이 있다. 공적 요양보험 도입당시 블루칼라에 선 적용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자영업자 그리고 공무원을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에 적용시켰다.

독일의 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전체 대상자의 88%인 7천만 명이 공적 요양보험 가입자고, 나머지 12%가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완형 민영보험의 가입자 수가 대체형과 비교할 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독일의 공적 요양보험은 전액 보험료로 조달된다. 요양보험 보험료율(유자녀 기준)은 시행 당시 1%에서 시작하여 2019년 기준 소득의 3.05%로 높아졌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자녀가 없는 직장인들은 소득의 3.30%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최고 보험료는 138.40유로이다. 보험료율의 빠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형 민영보험의 보험료율은 공적보험과 동일하다. 보완형 민영보험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터 일정기준(월 납입 보험료 10유로 이상 보험 가입)을 충족하면 월 5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준비기금<sup>8)</sup>을 일정기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미미하고, 단기적 재정수지도 불안하다는 점에서 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V-3〉 독일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추이(1995~2018년)



자료: 강성호·김혜란(2019)에서 재인용함

〈표 V-3〉 독일 민영 요양보험 가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천 명)

구분	수입보험료		가입자 수	
	대체형	보충형	대체형	보충형
2005	1,868	170	9,164	833
2010	2,096	439	9,593	1,700
2015	2,196	818	9,414	2,584
2016	2,165	890	9,375	2,677
2017	2,600	1,030	9,327	2,739

자료: 오승연·김미화(2016); German Insurance Association(GDV)(2018); 강성호·김혜란(2019)에서 재인용함

8) Pflegevorsorgefonds: 2015년부터 0.1%포인트(현재 연간 약 16억 유로)는 Bundesbank가 관리하는 특별 기금의 형태로 장기요양지원기금으로 이체됨. 이 기금은 향후 장기 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2035년 이후의 기여율 안정화를 위하여 도입됨

## 2.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급여지출의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여지출 증가의 통제 방안은 다루지 않고 있고, 급여지출이 현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보험료 부담 수준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현행의 부과방식 보험료 체계하에서는 미래 세대의 비용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으로서 연령별 평균보험료 방식과 종합보험료 방식을 검토하였지만 현행 노인장기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적립방식적 요소를 가진 평균보험료나 종합보험료 수준을 최소한 4~5배 인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방식 개편을 통한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방식의 개편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적립금을 가능한 많이 누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준비금 관련 제38조<sup>9)</sup>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다 강력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책임준비금 관련 제99조 규정이다.<sup>10)11)</sup>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비금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공기금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9)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5~102조

하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공공기금 제도로 운영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단년도 회계방식으로는 미래를 위하여 적립금을 누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 기금 적립을 위해서는 공공기금화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 간 부양방식으로서의 운영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단년도 회계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인 재정방식을 법령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3.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공적인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립방식의 개편을 통하여 사전적인 적립을 강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 적립이 가능한 민영 요양보험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대체하여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체형 민영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다. 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의 보험료가 공적 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전 적립적 성격도 약하고, 단순한 지역별 혹은 소득수준별 구분에 가깝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지역별 조합주의적 운영방식에 익숙해 있고, 특별한 급여상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은 보험 관리 운영상의 민영화 성격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은 독일과 달리 요양서비스는 동일하게 하되 종신보험형 요양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에의 가입유인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보험료 대비 최고보험료의 배율이 357배에 이른다.<sup>12)</sup>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민영 요양보험에 가입하는

12) 건강보험의 소득기준 하한 월 278,861원, 소득기준 상한 월 99,615,293원: 357배

것이 보험료 부담이 작아질 수 있다.

민영 요양보험의 도입이 가능하다면, 민영 요양보험 가입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했을 때 미래에 전가할 세대 간 이전분만큼의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고소득자가 민영 요양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여 그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 세대의 비용부담 증가로 미래세대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대체형 민영 장기요양보험에의 별도 가입 시에도 소득에 따른 평등성의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동일하게 한다면 평등성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보완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영 간병보험이나 민영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로서도 의미는 있다. 특히 시설 입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증의 경우에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 VI. 결론 및 정책제언

---

### 1. 결론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은 단년도 재정수지 균형 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방식이고, 보험급여 수급자와 보험료 부담자가 상이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수요 추계를 기초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변화 추이를 전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에는 부과방식에 기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적립방식에 기초한 보험료보다 낮지만, 노인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급속히 높아져 2046년경에는 적립방식에 기초한 보험료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방식에 기초한 보험료보다 부과방식에 기초한 보험료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서비스에 비하여 과중해짐을 의미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적립방식에 기초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이미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가하여 재정방식 전환을 통한 보험료의 추가 인상은 용이하지 않다. 2021년 기준으로 적립방식의 보험료는 부과방식의 보험료보다 5.44배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보험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률을 대폭 높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가능한 적립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재정추계는 장기적인 재정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2. 정책제언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행 재정방식을 수정하여 가능한 적립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장기요양준비기금과 같은 성격의 적립금을 누적하여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독일의 장기요양준비기금은 미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보험료율 수준에 가까운 최대수준으로 보험료율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방식 개편은 추가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기금화를 통하여 적립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적립은 쉽지 않더라도 매년 여유자금 발생하면 적립해 가능한 많은 적립금을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에서 적립률을 높이는 재정방식의 개편이 어렵다면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으로서 독일과 같이 전체 가입자 중 일부라도 제도상으로 사전적립이 가능한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정서적으로 평등의 원리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사회 여건상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립이 가능한 보험료율의 인상이나 사전적립이 가능한 대체형 민영보험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도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대체형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급조건과 급여항목은 사회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해야 한다.

둘째, 대체형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해야 한다.

셋째, 대체형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적립방식에 기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적립금은 별도의 독립적 계정에서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호·김혜란(20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방안』, 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_\_\_\_\_ (2018a),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_\_\_\_\_ (2018b), 『2018년 건강보험주요통계』  
\_\_\_\_\_ (2019),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2019), “건강·장기요양보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자료”
-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7. 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국외출장(영국, 독일) 출장 결과 보고”  
\_\_\_\_\_ (2017), 「2017 주요국의 장기요양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 국회예산정책처(2019a),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_\_\_\_\_ (2019b),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 기획재정부 장기전망협의회(2020. 2)
- 김민경·권진희·나영균·박상희·이희승·이정석·이호용·한은정·유애정·문용필·박세영·정서현·장혜민(2017), 『2017 주요국의 장기요양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김민국(2019), 「국내외 치매보험시장 현황과 우체국 보험의 시사점」, 『우정정보』, 118호, 우정경영연구센터
- 김용하·석재은·신종각·류건식·이삼식·김종면·김진수·이항석·김석일(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김용하(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4호
- 김윤(2020), “노인 지역돌봄체계 혁신 방안”, 노인의료사업군 심층평가 세미나(2020. 8. 10)

- 김현경(2019),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 『CIS이슈리포트』, 2019-7호, 한국신용정보원
- 박복희·전희주(2018), 「제3보험의 가입 요인: 간병보험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연구』, 제29권 제3호, pp. 77~106
- 보건복지부(2019),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2020. 9), “2020년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안전” 생명보험협회, 『보험통계』
- 선우덕·이태화·서동민·정순돌·김세진(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김용하·문병걸·서동민·장숙량·김미희·전은별(2020),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노인의료사업군』,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오승연·김미화(2016), 『독일의 공·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이정택(2018), “요양시설·요양병원 역할 정립방안,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공·사 협력”, KIRI 심포지엄
- 이호용·박세영·문용필·정현진·김기봉(2018), 『2017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통계청(2019), 『장래인구 특별추계』
- European Commission(2018), *LONG-TERM CARE IN GERMANY*
- Gerhard Backer(2016), “Refor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EC ESPN Flash Report*, 2016/43
- German Insurance Association(GDV)(2018),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2018*
- OECD(2017), *Health at a glance 2017*
- Sabrina Link(2019), “Long Term Care Reform in Germany At Long Last”, *British Actuarial Journal*, Vol. 3. pp. 1~8

厚生労働省, 社会福祉施設等調査: 結果の概要, 各 연도

厚生労働省(2019. 3), 介護給付費等実態統計: 結果の概要

독일 연방통계청(<http://www.destatis.de>)

<http://www.nli-research.co.jp>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 방안 / 송운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진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조직운영 / 정봉은·이창성 2020.8
- 2020-5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 방안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9
- 2020-6 보험영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법인보험대리점 혁신방안 / 정세창·김대환 2020.9
- 2020-7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한상용·문혜정 2020.10
- 2020-8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양승현·박정희 2020.12
- 2020-9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황현아·손민숙 2020.12
- 2020-10 사회적 신뢰와 보험 / 성영애·김민정 2020.12
- 2020-11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0.12
- 2020-12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20.12

##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 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 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 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 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종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 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 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계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 20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김석영·이소양 2020.8
- 2020-7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 양승현 2020.9

- 2020-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9  
 2020-9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정성희·문혜정 2020.12

##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하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9
- 202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황현아·손민숙 2020.9
- 2020-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I) - 소비자 중심 경영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0
- 2020-9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유미 2020.11
- 2020-10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혜란 2020.11
- 2020-11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11
- 2020-12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V) - 상품 및 채널 / 김동겸·김석영·정인영 2020.12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 간행물

---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문연차보고서</li> </ul>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 저 자 약 력

김 용 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mail : yongha01@sch.ac.kr)

연구보고서 2020-13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

ISBN 979-11-89741-34-1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